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53022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5. 28.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나종영	전자서명완료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19.2.28.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5. 10. 27.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 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 분	점유의 권 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한국토 지주택 공사	지1층 비01호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권 자	2017.1.7.	41,000,000				2016.12.5.	2016.12.6.	
〈비고〉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는 임차권자의 승계인이며 2025.10.17.자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 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제출됨.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53022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2-21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1안길 27-1

조적조 평지붕 3층

다세대주택

지1층 152㎡

1층 152㎡

2층 152.77㎡

3층 152.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1층비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1.0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2-21

대 313.2㎡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13.2분의 17.8945

감정평가액

44,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6.25

44,000,000

4,400,000

2회

2026.08.13

30,800,000

3,080,000

3회

2026.09.17

21,560,000

2,156,000

4회

2026.11.05

15,092,000

1,509,200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는 임차권자의 승계인이
며 2025.10.17.자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
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가 제출됨.